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신고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주택 임대차 계약 꼭! 신고하세요

## 주택 임대차 신고 처리 절차

### 1 공동 신고



### 2 단독 신고 (계약서 미첨부)

: 계약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 임대인이 30일 이내 미신고 시 임대인은 과태료 부과 대상

\* 오프라인 신고 → 공무원 입력, 온라인 신고 → 신고인 입력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신고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주택 임대차 계약 꼭! 신고하세요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제도 소개

###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란?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 하도록 의무화

#### 신고유형

- ① 신규·갱신신고 : 모든 신규 계약 +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목시적 갱신 등)의 경우 신고의무 제외
- ② 변경신고 :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건
- ③ 해제신고 :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개시 전 해제 건

###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주요내용

#### 신고의무

- 임대인 +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위임신고 가능)  
※ 계약서 제출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 신고주택

- ① 단독·다가구, ② 아파트·연립·다세대, ③ 주거용 오피스텔,  
④ 기숙사·고시원, ⑤ 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 신고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신고금액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과태료

- 미신고(자연사례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년 5월 31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신고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 주택 임대차 계약 꼭! ✓ 신고하세요



2021. 6. 1.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반드시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부과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이제는 의무입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확정일자를 한번에 해결하세요!



계약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하세요~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임대인, 임차인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제,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잊지말고 꼭! 신고하세요



임대차 시장, 더욱 투명하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임대차 신고



<http://rtms.molit.go.kr> | 콜센터 1588-0149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신고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주택 임대차 계약 꼭! 신고하세요

## 주택 임대차 계약 Q&A



### Q. 춘천시에 소재하는 보증금 7천만원인 주택을 임대차 계약 체결한 경우 신고 대상인가요?

A. 2021년 6월 1일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이며, 신고대상 금액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입니다. 상기 주택은 강원도 춘천시에 소재하고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 Q.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보증금 2,000만원 및 월세 40만원인 주택을 임대차계약 체결한 경우 신고 대상인가요?

A. 신고대상 금액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상기 주택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고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 Q. 갱신계약을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 갱신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구비되지 않더라도 입금증 등 입증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인정하여 신고수리 됩니다. 다만,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신고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주택 임대차 계약 꼭! 신고하세요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양식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신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지체없이
①임대인	성명(법인명) 주소(법인소재지)	주민등록번호(법인·외국인등록번호)	
②임차인	전화번호 성명(법인명) 주소(법인소재지)	휴대전화번호	
③임대 목적물	전화번호 종류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고시원] 그 밖의 주거용[ ] ④소재지(주소) 건물명( ) 동 층 호	휴대전화번호	
⑤임대 면적(m <sup>2</sup> )	m <sup>2</sup>	방의 수(칸)	칸
⑥신규 계약 [ ]	보증금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원 원 년 월 일 ~ 년 월 일	
임대 계약내용	증전 임대료 ⑦갱신 계약 [ ]	보증금 월차임 갱신 보증금 월차임 계약기간 체결일	
	[ ] 해당 [ ] 비해당	원 원 년 월 일 ~ 년 월 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임대인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임차인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위임 제출시)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출장소장) 귀하  
210mm×297mm[백성지(80g/m<sup>2</sup>) 또는 중질지(80g/m<sup>2</sup>)]

침부서류  
1. 주택 임대차 계약서 원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제6조의5제3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 받고자하는 경우 및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주택 임대차 계약서 등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각자 또는 단독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사용세·법 시행 규칙 제2조의2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각자 또는 단독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제6조의2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임대차계약당사자(이하 "계약당사자")는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계약당사자 중 일방 또는 1인이 신고서를 제출하고, 계약